

kiri Weekly

2012.2.6 제168호

이슈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공시제도(안)와 관련 시사점

포커스

중국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및 문제점

금융보험 해설

중국 금융시장 6: 증권산업 현황(2)

국내금융 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추가 양적완화정책 가능성과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_ 오바마 대통령, 주택시장 부양책 발표

유럽 _ 유럽 노동시장 개선 필요성 대두

_ 유로존 신용경색,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

_ 유로존, 실업률 격차 확대

_ EU 신재정협약 합의 내용

_ 그리스, EU 예산 통제 계획에 격분

일본 _ 일본 인구추계 결과,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

중국 _ 중국 양로기금(국민연금), 증시 투자 허용 전망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공시제도(안)와 관련 시사점

장동식 수석연구원

요약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공시제도(안)는 Solvency II 지침에 근거한 보험회사 공시제도 관련 위임행위(또는 실시행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임.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Solvency II와 관련한 위임행위 및 가이드라인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함.
 - 그 일환으로 2009년에 공시 관련 위임행위(또는 실시행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함.
 - 이러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유럽회원국 간 공시제도의 일치성을 위한 최소 요건에 해당함.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공시목적 및 원칙 등의 측면에서 일관성, 국제적 정합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음.
 - 동 공시제도(안)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시목적 및 원칙에 대해 일관되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공시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공시예외 요건(감독당국 승인 및 미공시 사유 서술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한편, 동 공시제도(안)는 경영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부채 평가, 자본관리 등의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보험회사 경영공시의 공시내용과 유사함.
- 이러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에게 공시제도의 일관성, 국제적 정합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이 국제적 정합성 및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목적 및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보험업법」 등에서 보다 명시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경우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가이드라인 또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원칙을 「보험업법」 내지 보험경영통일공시에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와 차이가 있는 사항(예: 공시예외 요건)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유럽의 Solvency II 감독체계는 최근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방안을 유럽보험연금감독청¹⁾이 공표하면서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음.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Solvency II 지침에 근거하여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방안²⁾ 및 가이드라인³⁾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2009년 11월에 Pillar 3(보험회사의 보고 및 공시) 이행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11년 11월에는 Pillar 3(보험회사의 보고 및 공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표함.
- 이 보고서들은 시장투명성 및 시장규율을 위한 정기공시(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이하 SFCR이라 함)에 대한 보험회사의 이행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서술하고 있음.⁴⁾
- 또한, 보험회사가 사전에 설정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및 가이드라인도 서술하고 있음.

■ 현재 Solvency II 감독체계가 글로벌 보험감독체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보험회사 경영공시제도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은행의 바젤 II 등과 함께 글로벌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데, 이 기준과 유럽 Solvency II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유럽의 Solvency II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제 기준 등이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이 국제적 정합성 및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임.
- 이를 감안하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결국 우리나라 보험회사 경영공시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1)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은 3개 유럽감독청의 하나로써 전신인 유럽보험연금감독자위원회(CEIOPS)의 기능 등을 수행함.
 2) 이행방안은 지침에서 위임한 위임행위(delegated act) 또는 실시행위(implementing act) 방안을 의미함. 이행방안 중 위임행위는 유럽위원회가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확정하고,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EC)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그리고 실시행위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에 의해 구체화되고, 유럽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승인함.
 3)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 공표한 가이드라인을 말함.
 4) 이 보고서들은 보험회사가 보험감독당국에게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보고(Regular Supervisory Report) 및 수시보고에 대한 이행방안 및 가이드라인도 함께 서술하고 있음.

■ 특히,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공시제도의 일관성, 투명성,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에게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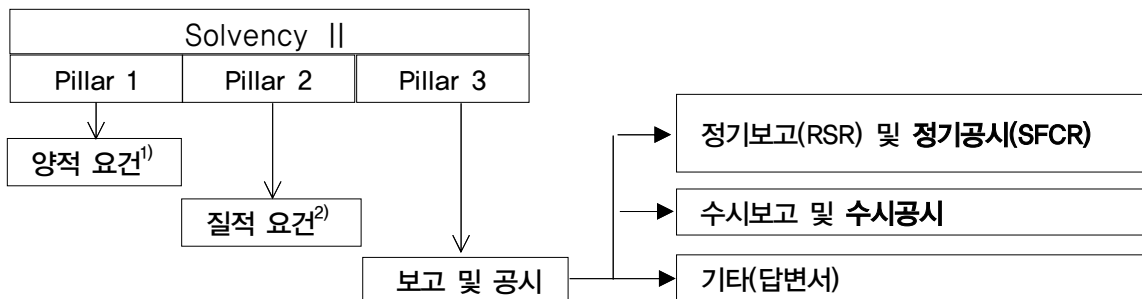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지침, 이행방안, 가이드라인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공시제도(안)에 국제보험감독지협회의 공시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음.
- 아울러,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공시요건 및 보고요건의 동시 검토, 공시에의 요건 설정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Solvency II Pillar 3과 공시제도

■ Solvency II Pillar 3은 공시제도(정기 및 수시 공시) 및 보고제도(정기 및 수시 보고)로 구성되어 있음.

- Solvency II은 Pillar 1(양적 요건), Pillar 2(질적 요건) 및 Pillar 3(보고 및 공시)의 3층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Pillar 1(양적 요건)은 자기자본, 요구자본, 책임준비금 등에 대한 평가요건을, Pillar 2(질적 요건)는 리스크관리, ORSA 등에 대한 평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Pillar 3(보고 및 공시)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Pillar 1(양적 요건) 및 Pillar 2(질적 요건)에 대한 정보를 보험감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에게 보고 및 공시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림 34〉 Solvency II의 Pillar 3(보고 및 공시)



주: 1) 자기자본, 요구자본(SCR, MCR), 책임준비금 등에 대한 요건.
 2)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ORSA 등에 대한 요건.

■ Pillar 3과 관련된 공시제도는 바젤 II와 같이 시장 메커니즘 및 시장규율⁵⁾ 강화와 보험회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보험회사는 이러한 목적 하에 시장참가자의 자율적 판단이 용이하도록 자기자본 산출에 대한 양적 수치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및 ORSA 등에 대한 질적 정보(프로세스 등)를 공시하여야 함.⁶⁾
- 이에 대하여 Solvency II 지침(제51조)은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 보고서(정기공시 또는 SFCR)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지침은 사전에 사건 발생 시 공시하기로 설정된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정기 및 수시공시 제도는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도 도입하여 보험회사에 적용하고 있음.⁷⁾
- 다만,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공시제도의 목적을 보험계약자의 보호로, 생명보험통일공시기준은 경영투명성의 제고 및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도모로 규정하고 있음.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현행 Solvency II 지침에 근거하여 공시제도 이행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Solvency II 지침에 위임하고, 위임행위(delegated act) 또는 실시행위(implementing act)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12년에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행위(안) 및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⁸⁾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 공시제도 이행방안 및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 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및 경영공시 작성지침 관련 권고 내용과 유사함.

5) 시장규율이란 회사의 안전 및 건전 경영 제고를 위해 시장참가자들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해당 회사를 감시 및 규율하도록 하는 감독방식임(금융감독원(2009), 『2009 개정판 금융감독개론』 참조).

6) 보고 시에는 Solvency II의 Pillar 2(감독당국의 점검)에서 요구되는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ORSA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7) 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공시제도는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8)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상반기에 이행행위(delegated act)안을 공표할 예정이며,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12년 9월에 최종기준안(Final Proposal for Standards)을 유럽위원회에 제출하고, 가이드라인도 최종확정할 예정임(<http://eiopa.europa.eu/activities/insurance/solvency-ii/index.html> 참조).

3.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 주요 내용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공시제도(안)와 관련하여 정기공시(SFCR) 시 비례성 및 중요성 원칙을 공시원칙으로 권고하고 있음.

- 비례성 원칙은 정기공시 시 서술하는 정보에 대하여 리스크의 특징·양·복잡성에 비례해야 한다는 개념이며, 이 원칙은 Solvency II 감독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임.⁹⁾
 - 이러한 비례성 원칙은 보험지주회사 및 보험회사, 겸영회사 및 전업회사, 대형사 및 중소형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의 특징·양·복잡성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중요성 원칙은 국제회계기준(IAS 1)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성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어떠한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 항목의 크기나 성격 또는 두 요소의 결합이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

■ 또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적시성 및 적절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공시원칙으로 권고함.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명시적으로 원칙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지 않고 있지만, 권고하고 있는 공시원칙 대부분은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공시 가이드라인과 동일함.
- 국제보험감독자협회(2002)에 따르면 적시성 원칙은 보험회사의 공시정보는 충분한 빈도로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 신뢰성 원칙은 보험회사의 공시정보는 합리적으로 서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로서 입증가능하며, 누락 및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임.
- 이러한 공시원칙들을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 경영공시제도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¹⁰⁾

9) CEIOPS(2009)의 “CEIOPS’s Advice for Level 2 Implementing Measure on Solvency II: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Requirements”(pp. 22~23)를 참조함.

10) 생명보험통일공시기준(제3조)은 완전하고 적절한 경영공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공시원칙과 동일함.

1.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공시 가이드라인 및 정의

공시 가이드라인	정의
적시성(timeliness)	인지 즉시 또는 다음 정기공시 시 제공
적절성(relevance)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 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보
신뢰성(reliability)	공시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로서 검증가능하고, 누락 및 오류가 없는 정보이어야 함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서술
일관성(consistency)	회계정책 및 제가정을 계속 사용
접근성(accessibility)	시장참가자의 정보획득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포괄성(comprehensiveness)	시장참가자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리스크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지도록 할 수 있는 포괄적 정보

자료: IAIS(2002), "Guidance paper on public disclosure by insurers", pp. 5~7.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정기공시에 대하여 요약, 경영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부채 평가, 자본관리, 내부모형, 양적 보고 양식 등의 구조와 서술 요건을 권고함.

-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의 경우 조직 정보, 적합성 프로세스, 리스크관리 시스템, ORSA, 내부통제 시스템, 내부감사 기능, 계리기능, 아웃소싱 등이 서술되어야 함.
-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공시에서는 리스크별 중요 익스포져, 집중, 경감 및 민감도 등이, 자본관리에 대한 공시에서는 자기자본, 요구자본, 내부모형과의 차이 등이 서술되어야 함.
- 이러한 공시의 구조 및 서술요건은 감독보고사항, 회계기준 등을 토대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험회사 경영공시 제도의 공시 구조 및 서술 요건과 대부분 일치함.¹¹⁾
- 그러나 감독당국 등의 감독적, 정책적 판단상 차이로 인해 세부 서술 요건에서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략리스크·평판리스크·전염리스크·난외항목 관련 리스크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시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 우리나라 경영공시는 주요 경영현황(요약), 일반현황, 경영실적, 재무상황, 경영지표, 위험관리,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하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 권고하고 있는 공시요건과 유사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음. 참고로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또는 위험관리) 공시기준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공시활용도도 낮음을 이유로 2007년 2월 공시기준에서 제외되었으나, 2009년에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의 공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이 공시기준에 다시 포함됨(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보(2008년 통권 33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 11. 25),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마련」 참조).

〈표 2〉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정기공시 구조 및 주요 내용¹⁾

구분	공시 내용	비고(현행 공시)
요약 (Executive Summary)	-	-
경영성과 (Business and Performance)	경영환경, 보험영업성과, 투자영업성과, 영업외손익, 기타	연차 재무보고서
지배구조 (System of Governance)	조직 정보, 적합성 프로세스, 리스크관리 시스템, ORSA, 내부통제 시스템, 내부감사 기능, 계리기능, 아웃소싱, 기타	내부 지배구조 및 준법관련 문서
리스크 프로파일 (Risk Profile)	리스크별 ²⁾ 중요 익스포저, 집중, 경감 및 민감도, 기타 정보	IFRS 7(금융상품의 공시) / IFRS 4(보험부채)
자산 및 부채 평가 (Regulatory Balance Sheet)	자산, 기술적 준비금, 기타부채 등에 대한 회계정책	IAS 1(재무제표의 표시) ³⁾
자본관리 (Capital Management)	자기자본, 요구자본, 내부모형과의 차이 등	IAS 1 ⁴⁾
내부모형	내부모형에 대한 질적·양적 정보, 기타 정보	-
양적 보고 양식	대차대조표, 보험료·손해액·사업비, 요구자본, 최저요구자본, 기술적 준비금	-

주: 1) CEIOPS(2009)의 "CEIOPS' Advice for Level 2 Implementing Measures on Solvency II: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Requirement"(CEIOPS-DOC-50/09, pp. 30~32), EIOPA(2011)의 "Consultation Paper on Quantitative Reporting Templates"(EIOPA-CP-11/009b, pp.10~12) 및 Deloitte(2009)의 "Solvency II reporting: Public disclosure and supervisory reporting in the new world"(pp. 8~9)을 참조하여 정리함.

2)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ALM 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기타 중요 리스크(전략·평판·전염·난외항목관련 리스크)에 대하여 서술함.

3)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4)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보.

■ 또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공시 목적과 보고 목적 간 차이를 감안하여 정기공시와 정기보고의 서술 요건에 차이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정기공시와 정기보고는 구조 및 항목에서 대부분 유사하지만 실제 서술 내용에는 차이가 있음.
- 경영성과 서술의 경우 정기공시에서는 정기보고와는 달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미래 추세 및 요인, 경쟁포지션, 잠재적 법규 이슈의 중요 특징 등을 서술하지 않을 수 있음.
- 리스크 프로파일 서술의 경우 정기공시에서는 정기보고보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산 및 부채 평가 서술의 경우 정기공시에서는 정기보고와 달리 기밀정보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 내용 등을 서술하지 않음.
- 양적 보고 서식의 경우 정기공시에서는 정기보고와는 달리 일부 양적 보고 양식만을 공시할 수 있음.

〈표 3〉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정기공시와 정기보고 비교

구분	정기보고에만 추가 서술되는 정보
요약 (Executive Summary)	-
경영성과 (Business and Performance)	감독당국 보고 시에는 경쟁 포지션, 법·감독 이슈, 사업연속성, 계획 대비 성과 등을 서술
지배구조 (System of Governance)	감독당국 보고 시에는 적합성, ORSA(장래 지급여력 니즈, 표준모형 미고려 리스크 등), 내부통제 내부감사기능 등을 보다 상세히 서술
리스크 프로파일 (Risk Profile)	감독당국 보고 시에는 공시내용과 비교하여 보다 상세히 서술
자산 및 부채 평가 (Regulatory Balance Sheet)	감독당국 보고 시에는 기밀정보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 내용 등을 서술
자본관리 (Capital Management)	감독당국 보고 시에는 재무적 경감수단 및 관리 행위의 효과 등을 서술
내부모형	-
양적 보고 양식	감독당국 보고 시에는 모든 양적 보고 양식 등을 작성

자료: Deloitte(2009), "Solvency II reporting: Public disclosure and supervisory reporting in the new world", pp. 8~9.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지나친 정보누출을 보완하고자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함.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경쟁자들에게 큰 이익을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비밀 유지가 필요한 보험계약자 또는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공시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공시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도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처럼 특수한 경우 보험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아울러,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공시정보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Solvency II 지침은 지급여력 및 재무포지션에 변화를 주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관련 정보를 보험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 한편, 공시정보의 적절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수시공시 요건에 대하여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최소한 자기자본요건(SCR 또는 MCR)을 위반한 경우는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도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처럼 수시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보다 상세한 수시공시 요건을 보험회사에 적용함.
 -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실채권 및 금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 소송에 의한 손실,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실 등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4. 시사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현행 우리나라 보험회사 경영공시 제도와 취지 측면에서 유사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 경영공시 제도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와 같이 경영투명성의 제고 및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하에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권고 공시 항목 및 내용과 유사하게 일반현황, 경영실적 및 재무상황, 경영지표 등을 서술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 권고하고 있는 수시공시제도와 유사하게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급여력 기준을 약화시키는 손실 등에 대해서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및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시 목적 및 원칙 등을 「보험업법」 및 공시기준 등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은 공시제도의 목적을 보험계약자의 보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은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³⁾

12) 보험회사는 경영전략 변경, 합병 및 매각, 조직개편, 중요한 소송 및 사고, 자기자본 요건 위반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함.

13) 「은행법」 제43조의3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은행 경영공시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시내용은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공시 가이드라인 또는 Solvency II의 공시 원칙을 대부분 충족한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및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험업법」 및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공시목적과 공시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에 대한 세부요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속하는 모든 중요 리스크에 대하여 리스크 경감 및 민감도 서술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¹⁴⁾
 - 또한, 감독당국의 승인 시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대신 공시하지 않은 사실과 그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와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의 최종확정 내용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kiri](#)

14) 우리나라 공시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ALM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뿐만 아니라 기타 중요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